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 (주)A는 2023. 9. 1.(합병등기일)에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비상장내국법인 (주)B를 흡수합병하였다. (주)A와 (주)B의 사업연도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이다. (2022년 세무사)

1. 합병 직전 (주)B의 재무상태표상 자본은 자본금 ₩100,000,000, 이익잉여금 ₩20,000,00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과 부채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재무상태표 상 금액	시가	유보
유동자산	₩100,000,000	₩100,000,000	
건물*	40,000,000	50,000,000	₩5,000,000
기타 비유동자산	200,000,000	200,000,000	
자산합계	340,000,000		
유동부채	80,000,000	80,000,000	
비유동부채	140,000,000	140,000,000	
부채합계	220,000,000		

* 건물의 취득일은 2018.10.1., 취득가액은 ₩60,000,000, 신고내용연수 및 기준내용연수는 20년, 유보는 상각부인액이며, 취득 이후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은 적법하게 세무처리되었다고 가정함

2. (주)A는 합병대가로 (주)A의 신주(액면금액 ₩120,000,000, 시가 ₩160,000,000)를 교부하였다. 합병대가 중 ₩30,000,000에 해당되는 금액은 (주)B의 상호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이다. (주)A는 합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차) 유 동 자 산	100,000,000	(대) 유 동 부 채	80,000,000
건 물	50,000,000	비 유 동 부 채	140,000,000
기 타 비 유 동 자 산	200,000,000	자 본 금	120,000,000
영 업 권	30,000,000	주 식 발 행 초 과 금	40,000,000

3. (주)A는 합병으로 승계한 건물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으로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합병으로 승계한 건물의 2023년 감가상각비 계상액은 ₩1,000,000이다. 합병 전 (주)A의 기존 건물에 대한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와 동일한 20년이다.
4. (주)A의 2022년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상 자산조정계정(건물)과 합병매수차손의 기말잔액은 ₩0이다.
5. (주)A가 대납하는 (주)B의 법인세 등은 ₩8,000,000이다.
6. 합병 전에 (주)B의 주식(취득가액 ₩40,000,000)을 소유하고 있던 (주)C는 지분율(30%)에 따라 합병대가로 (주)A의 신주(액면금액 ₩36,000,000, 시가 ₩48,000,000)를 받았다. (주)A와 (주)C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해 답>

4. 비적격합병인 경우 (주)A의 합병매수차손 기말잔액

(1) 합병매수차손 : $\text{Min}[\text{①}, \text{②}] = ₩30,000,000$

① 양도가액 ₩168,000,000 - 순자산 시가 ₩130,000,000 = ₩38,000,000

* ₩350,000,000(자산 합계) - ₩220,000,000(부채 합계) = ₩130,000,000

② ₩30,000,000(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금액)

(2) 합병매수차손 상각액 : $₩30,000,000 \times \frac{4}{60} = ₩2,000,000$

(3) 기말잔액 : ₩30,000,000 - ₩2,000,000 = ₩28,000,000